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9월 26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9월 26일

3. 제안이유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내무부로부터(지지 01210 - 9023,

'91. 9. 18) 도 여성회관의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관장의 직종 및 직급을 "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은영조례중 관장 직종 및 직급을 상향조정
(조례 제4조 제1항)

현 재	개 정 후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5. 검토의견

- 지난 1991년 9월 18일 내부부장관으로부터 도여성회관장의 직종 및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 되었고
-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등 여성회관 기능의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여성회관장의 직급 상향 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6. 관련법규 : 별첨

地方自治法(部分拔萃)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 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均衡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內務部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地方公務員의 定員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化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地方公務員의 任用과 試驗.資格.報酬.服務.身分保障.懲戒.教育訓練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둘 수 있다.

◎ 內務部令 第535號

地方自治團體의 地方公務員定員基準등에 관한 規則(部分拔萃)

第1條(目的) 이 規則은 地方自治法 第 10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員(以下 "定員"이라 한다)의 基準 其他 定員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規則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所屬機關"이라 함은 直屬機關, 事務所 및 出張所를 말한다.
2. "直屬機關"이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直屬機關을 말한다.
3. "事務所"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所를 말한다.
4. "出張所"라 함은 地方自治法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出張所를 말한다.
5. "補助機關"이라 함은 行政機關의 意思 또는 判斷의 決定이나 표시를 補助 함으로써 行政機關의 目的達成에 寄與하는 機關을 말한다.
6. "人口數"라 함은 前年度 住宅 및 人口센서스에 의한 人口數를 말한다.
다만, 住宅 및 人口센서스를 實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常住人口調査에 의한 人口數를 말한다.

第6條(基準定員의 策定) ① 地方自治團體의 適正한 定員의 範圍(이하 "基準定員"이라 한다)는 다음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策定한다.

1. 서울特別市の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公務員數 = $[-20,573 + (0.00329 \times \text{人口數})] \times 1.10$
2. 直轄市の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公務員數 = $[-258,4014 + (0.0013 \times \text{人口數})] \times 1.05$
3. 道の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公務員數 = $[1,086,2456 + (0.00015 \times \text{人口數})] \times 1.05$

4. 市の基準定員은 別表1, 郡의 基準定員은 別表2의 算式에 의하며, 自治區(이하 "區"라 한다)의 基準定員은 다음의 算式에 의한다.

가. 서울特別市の 區

$$\text{公務員數} = [613.02082 + (0.00036 \times \text{人口數}) + (24.53364 \times \text{行政洞의數})] \times 1.05$$

나. 直轄市の 區

$$\text{公務員數} = [207.6481 + (0.000509 \times \text{人口數}) + (11.8097 \times \text{行政洞의數})] \times 1.05$$

②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算式에 의한 값의 소수점이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③地方自治團體에 國家公務員의 定員이 있는 경우 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定員에서 國家公務員의 定員을 뺀 수를 地方公務員의 基準定員으로 한다.

④防犯業務에 從事하는 雇傭職公務員의 定員과 統合公課金業務에 從事하는 技能職公務員의 定員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基準定員에서 除外한다.

第7條(定員의 管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別表3의 基準에 의하여 所屬機關別, 補助機關別로 定員을 配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부득이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別表4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種類別 定員 策定基準에 의하여 定員을 策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每年 6月 30日과 12月 31日을 基準으로 定員의 適正與否를 調査, 確認하여야 한다.

④第3項에 의한 定員의 調査 結果는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地方自治團體別, 機關別, 職級別, 職列別로 綜合 作成한 후 다음달 末日까지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⑤地方自治團體는 새로운 增員 需要가 發生한 경우에는 總定員의 範圍안에서 自體 調整을 통하여 이에 對處하여야 하며, 調整對象의 優先順位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與件의 變化로 인하여 業務의 필요성이 減少된 分野의 人力
2. 類似 또는 重複되거나, 지나치게 細分된 機構에 所屬된 人力
3. 法人 其他 團體등의 業務能力이 地方自治團體의 業務能力보다 높고 또한 國民의 權利, 義務와 直接 關係없는 業務分野의 人力 및 業務의 性質上 法人 其他 團體 등에 委託할 需要가 있고 또한 國民의 權利, 義務와 直接 關係없는 業務分野의 人力

⑥市長, 郡守, 區廳長이 第6條第1項第4號의 定員 範圍안에서 增員을 하거나, 第1項 및 第2項과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員을 調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 道 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⑦市, 道知事は 당해 市, 道와 管轄 市, 郡, 區間 또는 管轄 市, 郡, 區 상호간의 公務員 定員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市, 道 및 市, 郡, 區定員의 100분의 5의 範圍안에서 상호간의 定員을 調整할 수 있다. 다만, 市, 郡, 區의 定員을 市, 道の 定員으로 調整할 수 없다.

⑧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定員을 超過하여 定員을 策定할 경우에는 미리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市長, 郡守, 區廳長이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市, 道知事를 거쳐야 한다.

第12條(職級別 定員) ①地方自治團體의 職級別 定員은 合理的인 職級 體系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別表5의 職級別 定員基準에 의한다.
이 경우 소수집 以下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버린다.

②地方自治團體가 그 地方公務員의 定員을 策定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定員에 대하여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市長, 郡守, 區廳長이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市, 道知事를 거쳐야 한다.

1. 서울特別市 및 그 區 : 一般職 4級以上, 研究官, 指導官, 消防正以上 消防公務員, 技能職 4等級以上, 別定職 4級相當以上の 定員
2. 直轄市, 道, 市, 郡, 區 : 一般職 5級以上, 研究官, 指導官, 消防領以上 消防公務員, 技能職 5等級以上, 別定職 5級相當以上の 定員

第13條(是正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 規則에 定한 基準과 다르게 定員을 策定한 경우에 市, 道知事は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內務部長官은 市, 道知事에게 이의 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을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즉시 是正하고, 그 結果를 市長, 郡守, 區廳長은 市, 道知事에게, 市, 道知事は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別表省略)